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70
----------	------

2020년 12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0년 12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 조성
 - 발행금액 : 3,000억원
 - 필 요 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1)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3,000억원) 발행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임.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같은 투자성 사업과,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 1)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경상적 지출과 재난관리기금의 부족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의 발행이 불가능하기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2)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 지난 6월 코로나-19 긴급 대응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수해 등의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 그 중 1,500억원에 대해서만 금년 7월 23일 실제 지방채 발행(서울특별시지방채 2020-5)이 이뤄졌으며, 지방채 발행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292억 23백만원, 풍수해 등의 일반재난 대응에 426억 97백만원을 지출하여 12월 14일 기준 예치금은 1,503억원인 것으로 파악됨.

2)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현황('20.12.14. 기준)

▶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결산금액	2020년 법정 전입금	2차추경 전입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3차 추경 전입금	지방채	국고 보조금	이자 등
재난계정 (안전총괄과)	1,226,844	493,475	135,920	325,586	108,300	150,000	3,918	9,645

* 2019년 결산금액: 2019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 2020년 법정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향후 회수조건 없이 전입되는 수입
 - 최근 3년 동안(2017~2019)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코로나19				사고 이월	관리비
			소계	코로나19 긴급대응	소상공인 생존자금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		
재난계정 (안전총괄과)	1,076,544	136,379	938,634	158,480	671,854	108,300	1,521	10

* 일반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풍수해 응급복구 등
 * 코로나19: 코로나 긴급대응(방역물품 구매 등), 소상공인생존자금(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취약계층 지원)
 * 사고이월: 2019년 사업 중 이월 사업

[표] '20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 내용
계	1,076,544	
사고이월	1,521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
기금관리비	10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비
소계 (사고이월 외)	938,634	코로나19 대응
	93,682	재난예방 사업
	42,697	풍수해 복구 사업
'20.1.28.(1차)	16,818	대중교통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 홍보활동 지원
'20.2.04.(2차)	2,882	방역물품 구입, 감염병 진단장비 및 시약,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등
'20.2.17.(3차)	2,975	대중교통시설 방역비 지원, 구급대원 방역장비 구매 지원 등
'20.3.03.(4차)	35,948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응압병상 확보
'20.3.12.(5차)	10,084	- (코로나 긴급대응) 천 마스크 제작, 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92,049	- (시설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20.3.18.(6차)	33,589	해외마스크 구매, 방역물품 구매 비원, 잠시멈춤 캠페인 지원 등
'20.4.09.(7차)	826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
'20.4.23.(8차)	16,618	온라인 등교 개학 지원, 해외입국자 특별수송대책 지원 등
'20.4.24.(9차)	3,977	선별진료소 검사비 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20.5.08.(10차)	250,000	자영업자 생존지원금
'20.5.12.(11차)	108,300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20.5.19.(12차)	325,886	자영업자 생존지원금
'20.6.02.(13차)	3,025	- (코로나 긴급대응) 방역물품 지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1,633	- (시설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및 제설자재 구매
'20.6.08.(14차)	1,785	청사 및 소극장 방역,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지원 등
'20.6.25.(15차)	1,991	음압병상 설치 지원, 진단시약 구매 지원
'20.7.20.(16차)	94,707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인노래방 방역특별지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20.7.23. 지방채 발행(1,500억원)>

'20.8.10.(17차)	2,036	시청사 방역, 해외입국자 수송지원, 요양병원 검사비 지원 등
'20.8.28.(18차)	3,150	중환자병상 확대, 전동식호흡 보호구 구매, 태릉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20.9.07.(19차)	42,207	하천준설, 빗물펌프장 긴급보수, 한강공원 빨래터, 붕괴된 산사면 복구 등
'20.9.16.(20차)	9,967	코로나 긴급대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전통시장 방역 등)
	331	풍수해 응급복구(시립 어르신복지시설 개보수)
'20.10.21.(21차)	9,925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대중교통(지하철) 방역물품 지원 등
'20.11.18.(22차)	159	풍수해 응급복구(시립 장애인복지관 집중호우 개보수)
'20.12.00.(23차)	4,145	서울의료원 및 동부병원 임시병상 설치 및 코로나 확진자 음압병상 확대

- 한편, 금년에 이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득하였지만 실제 발행이 되지 않은 나머지 3,000억원은 회계연도 내 실제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소멸될 예정임.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차년도에 신규로 발행하기 위한 지방채 3,000억원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며, '21년 지방채 발행한도가 총 2조 8,042억원인 반면 기 편성액이 2조 2,307억원으로 신규 발행 지방채 3,000억원이 추가되더라도 한도는 초과

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³⁾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의 협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상
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
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볼 때 불가피한 조치
라 여겨짐.
- 다만,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지방채 발행 이후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지출의 타당
성, 효율성 등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실제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지방채 발행이 '21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⁴⁾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난관

3)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
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
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 ⑤ (생략)

4)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리기금의 재원확보 가능 유효기간('20.12.31.)을 연장하는 개정안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의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안 번호	2070
----------	------

제출년월일 : 2020년 12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 조성

○ 발행금액 : 3,000억원

○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최송천(☎2133-8041)